#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0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최형두·김예지·정동만

김석기 • 박성민 • 엄태영

김미애 • 인요한 • 김종양

신성범 · 서천호 · 김소희

조경태 · 서범수 · 김상훈

성일종 • 이종욱 • 송석준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 법률 제 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 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따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70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 정 안

- 제7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삭 제>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 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 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삭 제>